

日本の水道用 外國產品 檢查

경제 마찰의 해소라든가 무역의 불균형 시정이라든가를 배경으로 외국산품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폭넓게 수입되고 있는데 수도 분야에 있어서도, 외국산품문제가 현실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 제품을 될수록 적극적으로 수입하여 무역의 불균형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행화를 도모하고 있다.

수도에 관한 제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 후생성당국을 통하여 그 의향이 전해진지 오래지만, 그동안 표면화하지 않고 지나갔다.

그런데 요즈음 외국제품 수입문제에 있어 제품의 검사문제가 제기되어 검사방법에 대해 일본수도협회가 관계단체에 설명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외국에서 생산된 수도용품을 일본에 수입하고 싶다는 의향이나 구체적인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본수도협회가 「회원의 총의」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도용품의 검사를 외국산품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그 검사규칙을 결정한 것은 주목할만한 조치이다.

일본수도협회의 수도용품에 대한 검사는, 품질의 향상과 안정에 크게 공헌해 이미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회원의 총의에 의해서 창설된 일본수도협회의 검사제도는 엄정한 규격과 검사로 수도용 기자재의 불량화를 방지하여 우수한 수도시설·정비

를 초래했고 사용자 공동의 품질확보 방법 이기도 하였다.

그런 뜻에서 수도에 관계되는 외국산품에 대하여 일본수도협회의 검사제도가 어떻게 상관을 가지는가에 관심이 모아져 있었지만 결론은, 일본수도협회의 검사를 외국산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다는 것이다.

일본수도협회 검사사업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타당한 결론으로서 9개조항으로 된 「외국산품 검사에 관한 규칙」을 작성하게 되었다.

일본수도협회는 이 규칙을 87. 12. 4에 제정하고, 88.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87. 12. 10부터 15일에 걸쳐 관계 단체 등에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외국산품에 까지 검사를 확대한 조치는 획기적인 일이 될것이다. 수도용 「외국산품 검사에 관한 규칙」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외국산품이란」 일본국 외에서 제조된 수도용품 및 수도용품의 부품.

「외국산품의 검사는」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외의, 일본수도협회의 수도용품 검사규정, 검사통칙, 검사시행요항 및 검사관계규칙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외국산품의 검사장소는」 일본수도협회 검사공장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등록된 검사공장으로 한다.

「검사에 관한 서류는」 일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결국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도용품과 같은 검사를 적용하는 「무차별의 원칙」에 입각한 적절한 대응이라 생각된다.

외국산품과 경합이 될만한 일본업계는 복잡한 심경이겠지만, 외국의 메이커 혹은 상사가 본격적으로 판매전을 펴는 경우 어떻게 될것인가.

검사에 의한 「품질검증」에 추가하여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되기 때문이다. 국제화라는 시대의 물결은 여기까지 밀어 닦치고 있다.

〈1988. 2月號에 日本「水道公論」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 紹介한다.〉